



# 인터넷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일부개정법률안 7월 25일 공포, 2012년부터 시행 예정-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  
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약관리법개정법률안  
이 공포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7  
월 25일 농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약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11.6.29.)함에 따라 법률공포 절차를 거  
쳐 이같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  
된 농약관리법은 20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  
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에 대  
한 농약을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하였  
다. 이와함께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  
이나 돌발병해충 발생시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촌진흥청장의 허  
가를 받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 오남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하위법령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밀수입 농약의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약제조업 등의 변경등록·폐업 신고제도 및 농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 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하였다.

다음은 신설 및 강화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 ■ 천연식물보호제 정의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것이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 ■ 우수농약의 개발·보급 근거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보급하고 농약 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판매업자의 판매관리인 지정 등

판매업자등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등 또는 원제가 사람과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폐기·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시험학술연구용 등 미등록농약수입근거 조항 마련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시험연구기관 지정 기준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 또는 원제의 약



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까지 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이다.

또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인터넷 및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신고포상금제 도입

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